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02일

우정읍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김 *주	김 *주 1970-09-20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18